



수험소식 및 수험자료

2021년도 제39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기출문제

(행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상법, 부동산등기법)

행정법

【문 1】

甲은 乙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였고, 서울특별시 A구청장은 甲과 乙 사이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인가하였다. 이후 乙은 丙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다시 양도하였고, A구청장은 乙과 丙 사이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역시 인가하였다. 그런데 뒤 늦게 乙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여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필요한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A구청장은 乙이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丙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丙은 A구청장을 상대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1. A구청장이 丙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그 근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2. 처분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별표 3] 2. 가. 15. 나.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양수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를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15호에는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만을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양수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는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A구청장이 丙에 대하여 한 면허취소처분의 처분서에는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별표3] 2. 가. 15.’가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면허취소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丙이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서술하고, 그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번 문항에서 제시한 쟁점에 한하여 답안을 작성하시오.). (35점)

참조조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하략)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도·양수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하략)

③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수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운수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5. 제14조(제35조·제48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

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사업 면허·등록·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1.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사업면허·사업등록·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
2. 노선폐지명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서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노선의 폐지명령
3. 감차명령: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동차 중의 일부(제2호의 노선폐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폐지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전부를 말하며, 별표 3의 처분기준에서 감차할 자동차 대수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를 말한다)의 감차명령
4.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
5. 사업전부정지: 사업면허·사업등록 또는 사업허가 전부의 정지
6. 사업일부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

【별표3】

사업면허취소·사업허가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중개사업

위반내용	근거법조문	처분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5. 법 제14조(법 제35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및 플랫폼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나. 법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양수 인가를 받은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15호	사업면허취소		

【문 2】

1. 甲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청이 보유하고 있는 A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행정청은 A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

甲은 거부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행정청은 A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시 甲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이하 ‘재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甲은 행정청의 재거부처분이 기존 확정판결의 효력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 (30점)

2.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설명하십시오. 다만, 취소소송임을 전제로 한다. (20점)

민 법

【문 1】

〈기본적 사실관계〉

2015. 3. 甲 종종은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면서, 사전에 종종원인 丙과 편의상 그 등기를 丙 앞으로 해 두기로 한 약정에 따라, 등기는 丙 명의로 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대금을 완납하였고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각 설문은 상호관련성 없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1.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15점)
2.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甲은 丙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5.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甲은 이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2019. 8.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수여하였다.
이후 丁은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이름으로 丙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그 양도통지서에는 甲과 丁 사이에 작성된 채권양도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2020. 3. 丁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자, 丙은 ① 채권양도통지

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점을 주장하면서 丁의 청구를 거절하고 있다. 丙의 각 주장의 당부를 논하시오. (20점)

3.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丙은 X토지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기회로 이를 戊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戊는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 의심을 하였지만 X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 丙, 戊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15점)

【문 2】

〈기본적 사실관계〉

A조합은 조합원들이 생산한 친환경 버를 판매하는 농업협동조합이고, 甲과 乙은 A조합의 조합원들이다. A조합은 2000. 1. 1. 甲과 乙에게 각각 2억 원씩을 변제기 2010. 1.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A조합은 2000. 5. 1. B은행으로부터 원금 1억 원을 이자 연 5%(기한 후 연 10%), 7년 만기원리금 일시상환으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A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협조요청에 따라, 甲은 위 대출금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같은 날 자신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A조합, 근저당권자 B은행, 채권최고액 1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乙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아래 각 문항

에 답하시오(각 설문은 상호관련성 없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1.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A조합의 대출금 상환이 일체의 지급 없이 연체되자 B은행은 2010. 5. 1. X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甲은 A조합을 상대로 저당목적물인 X토지를 상실할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들어 담보제공자인 자신에게 대출원리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乙 또한 A조합을 상대로 연대보증인인 자신에게 대출원리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甲과 乙의 위 각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 만약 甲 또는 乙의 주장이 타당할 경우에 이를 이행의 소로 제기하면서 2010. 5. 1.까지 발생한 대출금 관련 금액 및 이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면 인용 범위 및 구체적 액수에 대하여 논하시오. (20점)

2.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甲은 2008. 3. 1. B은행과 사이에 X토지에 관한 A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채무인수약정 및 이를 위한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무자를 甲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A조합이 2010. 2. 1. 甲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을 청구하자 甲은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A조합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대등액의 상계를 주장하였다. 甲 주장의 인용 여부를 논하시오. (10점)

3.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C는 A조합에 대한 5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2008. 9. 3. A조합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

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압류추심명령이 乙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乙은 2008. 10. 1. B은행에게 7,000만 원을 상환하였다.

C가 2012. 1. 1. 乙을 상대로 추심금 이행의 소를 제기하자 乙은 보증인으로서 취득한 A조합에 대한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고 항변하였고, C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발생 이후에 변제로 인해 취득한 구상권에 기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각 주장의 당부와 C 청구의 인용 여부를 논하시오. (20점)

민사소송법

【문 1】

〈기본적 사실관계〉

甲이 乙 회사의 대표자 丙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가처분이의소송의 판결 선고 직전에 가처분신청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丙은 6개월 동안 乙 회사의 직무를 집행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아래 문항에 답하시오(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음. 각 답변에는 근거를 함께 기재하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1. 丙이 甲을 상대로 개인 명의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부분이 甲에게 송달되었다.

가. 원고 소송대리인(乙 회사 및 丙 모두로부터 적법하게 소송위임을 받았음)은 乙 회사를 원고로 추가하는 당사자추가신

청서와 丙의 소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이 경우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하시오. (5점)

- 나. (가.와 별개의 사안임) 丙이 甲을 상대로 개인 명의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장부분이 甲에게 송달되었고 이후 열린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丙은 원고의 표시를 丙에서 乙 회사로 정정한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甲이 이에 동의하였다. 이후 乙 회사와 甲 사이에 변론이 이루어져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경우 제1심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논하시오. (5점)
2.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소장의 원고 표시란에 ‘乙 회사 대표자 丙’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乙회사의 대표’라는 날인이 되어 있다. 소장 기재 청구의 내용은 “원고 丙 및 乙 회사 소속구성원 30명이 甲의 가처분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으로써 원고 丙 및 乙 회사 소속 구성원 30명에게 각 100만 원씩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소장의 첨부서류로 “乙 회사 대표자 丙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본 소송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위임자 30명이 기명날인한 위임장이 제출되었고, 그 후 丙 등 30명의 이름으로 “丙을 소송수행자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선정당사자(원고) 선정서’가 제출되었다. 제1심의 제1회 변론기일에 “丙은 乙 회사의 대표자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乙 회사 소속 구성원 30명의 선정당사자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는 진술이 이루어졌다. 제1심은 乙 회사가 아니라 丙 및 위 30명이 丙을 당사자로 선정하여 진행

하는 소송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하여 丙 및 위 30명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甲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원고를 乙 회사로 보고 乙 회사에 항소장부분을 송달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乙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경우 원고의 확정에 관한 제1심 및 항소심 판단의 적법 여부를 논하고, 丙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하시오. (12점)

3. 乙 회사 및 丙(丙 자신 및 乙 회사의 구성원 30명을 선정자로 하는 선정당사자임)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음).
- 가. 위 소 제기 이후 甲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었고 그 심판의 결정문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 경우 소송절차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논하시오. (10점)
- 나. 제1심 소송계속 이후 甲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었음에도 제1심이 이를 간과하여 甲 패소의 본안판결을 하였다. 위 판결정본은 甲 본인에게만 송달되었다. 이 경우 제1심 판결의 효력 및 甲의 구제수단에 관하여 논하시오. (10점)
- 다. 제1심에서 선정자 중 丁이 보조참가신청을 하여 제1심 법원은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확정되었다. 이후 乙 회사 및 丙이 소를 취하하였고 甲이 이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丁이 丙의 소취하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이 경우 제1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설명하시오. (8점)

【문 2】

다음 각 설문에 약술하시오(각 설문은 상호 관련성이 없음).

1.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2. 쌍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결석한 경우의 법적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3. 반소의 허용 요건으로서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형 법**【문 1】**

甲은 화물차를 밀수출하기로 마음 먹고 화물차량을 판매할 사람을 물색하였다. 乙은 A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B운수회사(운송사업자)와 소유권의 귀속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화물차량을 지입하여 운행하고 있었다. 乙은 B운수회사 등의 승낙 없이 화물차량을 甲에게 매도하고자 하였고, 甲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화물차량을 매수하였다.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관세사 등을 통해 세관에 수출내용을 신고하여 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甲은 이와 별도로 노후한 화물차량을 헐값에 구매한 후 마치 이를 수출하는 것처럼 관할 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고 관세사 명의의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발급받은 다음 노후

화물차의 차대번호를 삭제하고 乙로부터 구입한 밀수출 대상 차량의 차대번호를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후 甲은 수출화물선적 대행업체에 위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한편 乙은 C와 분할 전 토지를 각 특정 부분 1(乙소유), 2(C소유)를 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다가, 위 분할 전 토지가 1, 2 토지로 분할되면서 분할 전 토지의 각 1/2씩 공유지분등기가 그대로 1, 2 토지로 전사되었다. 乙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1 토지만으로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자, 2 토지에 전사되어 있던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甲, 乙의 형법상 죄책을 논하시오(죄명, 적용법조, 죄수를 포함하고, 특별법위반은 논외로 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것). (50점)

【문 2】

甲은 보이스피싱 일당인 A로부터 계좌번호와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을 높인 다음 돈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A의 말에 속아 A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A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B에게 B의 ◇◇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위 계좌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위 ◇◇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 전부를 자신이 알려주는 위 甲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였고, 이에 속은 B는 A의 지시에 따라 위 ◇◇은행 계좌

에 있던 1,000만 원을 위 甲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甲은 얼마 후 자신의 위 ○○은행 계좌의 잔액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B로부터 1,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즉시 위 돈을 인출하였다. 그 무렵 乙은 친구인 甲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甲은 위와 같이 인출한 1,000만 원을 乙에게 빌려주었다.

乙은 돈을 차용한 직후 甲과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자신이 소유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줄기로 약정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마쳐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乙은 갑자기 추가로 돈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지인인 丙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甲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 위하여 준비한 서류를 이용하여 丙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약 한 달 후 乙은 丙에게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고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丙은 乙로부터 대여금 전액을 변제받았음에도 이를 숨긴 채 청구채권을 대여금 1,500만 원이라고 기재하여 乙 소유의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에서 丁이 매각대금 1,500만 원에 위 아파트를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집행법원은 丙에게 매각대금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자 丙에게 배당금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甲, 乙, 丙의 형법상 죄책을 논하시오(특별법 위반은 논

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며, 대법원 판결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린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50점)

형사소송법

【문 1】

아래의 각 물음에 답하시오(아래 각 물음은 상호 관련성이 없고, 견해 대립이 있을 경우 대법원 판례 다수의견에 따름).

1.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법경찰관 A는 교통사고 현장과 다른 곳에서 112차량을 타고 순찰근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4분 만에 경찰서 지령실로부터 교통사고를 일으킨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가 경찰서 방면으로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아파트 쪽으로 갔다. 사법경찰관 A는 다시 교통사고 당시 그 현장과 다른 곳에서도 보 순찰 중이던 사법경찰관 B로부터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가 펑크가 난 상태로 ○○아파트 뒷골목으로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그 주변을 수색하던 중 ○○아파트 뒤편 철로 옆에 세워져 있던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에서 甲이 내리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 승용차의 운전석 범퍼 및 펜더 부분이 파손된 상태인 것을 확인하였다. 사법경찰관 A는 그의 확인 요구 등에 순순히 응했던 甲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웠고, 그 직후 甲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었다. 체포지점은 교통사고 지점에

서 거리상 2km 정도 떨어져 있고 시간상으로도 약 20분 정도의 차이가 있다.

아래 문제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가. 甲이 현행범인 및 준현행범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 법령을 들어 차례로 설명하십시오. (10점)

나. 사법경찰관 A의 甲에 대한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판례를 들어 설명하십시오. (5점)

2. 피고인 甲과 피고인 乙은 공모해 피해자 A를 모욕했고, 피고인 乙은 피해자 B를 폭행했다. 피해자 A의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에 따라 피고인 甲이 먼저 모욕죄로 공소제기됐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후 피해자 A는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고 이들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

그 이후 피고인 乙이 모욕죄 및 폭행죄로 공소제기되었다. 피고인 乙에 대한 1심 진행 중 피해자 B가 사망했고, 피해자 B의 상속인들은 위 1심 법원에 피고인 乙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위 1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모두 제출되어 증거로 채택된 상황에서 변론을 종결하였다. 위 1심은 피고인 乙에 대해 전부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위 1심 판결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각 죄별로 각각 설명하십시오. (10점)

3. 피고인 甲은 2020. 7. 8. 1심 판결을 선고받고, 2020. 7. 14.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2020. 7. 27. 항소심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다. 정부는 2020. 7. 경

국무회의 심의·의결,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를 통해 2020. 8. 17.(2020. 8. 16.은 일요일임)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피고인 甲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말일이 연제인지에 대해 관련 규정 및 판례에 따라 설명하십시오(단, 항소심은 국선번호인을 선정하거나 피고인이 사선번호인을 선임한 바 없음). (5점)

참조조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2005.6.30. 삭제)
 6.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7. 5월 5일(어린이날)
 8. 6월 6일(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제3조 [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

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4. 만 70세인 피고인 甲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항소심은 피고인 甲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비로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위 국선변호인은 법정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1심 판결에 직권조사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 甲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래 문제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가. 변호인조력권 측면에서 항소심 결정의 위법 여부를 가르는 기준에 대해 판례(다수의견)에 따라 설명하십시오. (5점)

나. 항소심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 변호인조력권 측면에서 그 위법을 제거하기 위해 항소심이 취했어야 할 조치에 대해 판례(다수의견)에 따라 설명하십시오. (5점)

5. 피고인 甲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A의 돈을 6회에 걸쳐 횡령했다는 사실에 대해 업무상횡령죄로 공소제기되었다. 항소심은 위 업무상횡령 행위 중 5회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나머지 1회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아래 문제에 대해 설명하십시오.(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어떤 위법이 없고, 위 업무상횡령죄는 포괄일죄임).

가. 위 항소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한해 검사만이 상고한 경우 상고심의 이심대상 및 사실상 심판대상(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 판례에 따라 차례로 설명하십시오. (5점)

나. 위 항소심 판결의 유죄 부분에 한해 피고인 甲만이 상고한 경우 상고심의 이심대상 및 사실상 심판대상에 대해 판례에 따라 차례로 설명하십시오. (5점)

【문 2】

아래의 각 물음에 답하십시오(아래 각 물음은 상호 관련성이 없고, 견해 대립이 있을 경우 대법원 판례 다수의견에 따름).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9. 12. 15. 15:45경 부산 해운대구(주소 생략) △△모텔 303호실 내에서 공소 외 A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0. 06:20경 부산 해운대구(주소 생략) ▽▽모텔 404호에서 공소 외 A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11. 17:00경 부산 해운대구(주소 생략) ○○모텔 202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 12. 01:00경 부산 해운대구(주소 생략) ◇◇모텔 505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추가적 사실관계>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별건의 업무방해 등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에 확정되자, 위 확정판결에서의 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한 다음 제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그대로 선고하였는데, 항소심판결 이유 중 '양형의 이유'란에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고 따로 양형조건도 될 수 없는 사실인 필로폰 '판매'가 양형사유처럼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항소심법원이 양형의 기초 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상고심 심리 결과 기록상 위와 같은 파기사유 외에는 제1심과 항소심의 양형조건에 달라진 부분은 없고, 제1심도 비록 위 업무방해 등 사건이 확정되기 전이었지만, 위 업무방해 등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의 형의 균형을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을 정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적법성에 대하여 설

명하시오. (20점)

2. <추가적 사실관계>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채과 함께 필로폰을 판매하여, 검사가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 복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서파일을 작성하였다.

이 새로운 문서파일 또는 거기에서 출력한 문서를 로그파일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와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3. <추가적 사실관계> 제1심 및 항소심에서 각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피고인만이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를 하였고,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이 파기환송 되어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하면서 파기환송 전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범죄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에 대하여 파기환송 전 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 이 경우 파기환송심 판결의 적법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4. <추가적 사실관계> 피고인에게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미결구금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와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로 나누어 형사보상 청구 가능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상 법

【문 1】

다음의 각 설문에 대하여 답하십시오(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 규정을 적용할 것).

1. 다중대표소송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15점)
2.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 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15점)
3. 甲 주식회사는 이사회 규정으로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이사회 결의 없이 甲 주식회사로 하여금 B의 C에 대한 채무 30억 원에 관하여 보증을 하게 하였다. B가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C는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甲 주식회사의 위 보증행위는 이사회 규정에 따른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에 해당하고, C는 A가 이사회의 결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된다. C는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보증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논하십시오. (10점)
4. 乙 주식회사는 2021. 3. 1. 자신이 운영하던 도축·가공공장 및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 상표권, 거래처 등을 포함한 영업권을 丙 주식회사에 영업양도하였다. 위 영업양도의 대상이 된 도축·가공공장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 위 공장에서 가공된 육류는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었다. 위 영업양도 이후에도 乙 주식회사는 여전히 전국적으로 육류 유통·판매 영업을 영위하였다. 丙 주식회사는 “乙 주식회사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乙 주식회사는 “경업금지 지역의 범위는 공장이 위치한 서울 및 그 인접지역으로 한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乙 주식회사의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논하십시오. (10점)

【문 2】

1. 다음의 각 사실관계를 읽고 그 아래의 각 설문에 대하여 답하십시오(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의함).

〈기본적 사실관계〉

가.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1979. 6. 28. 설립된 합자회사로서, 2009. 5. 29. 당시 피고의 무한책임사원은 원고와 甲이었다.

나. 피고의 유한책임사원이던 乙, 丙은 2009. 6. 10. 당시 피고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이던 원고를 상대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선고를 청구하였고, 2012. 12. 13. 원고에 대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다. 甲은 2014. 5. 12. 사망하였고, 이로써 원고가 피고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

라. 피고의 정관 제18조는 “무한책임사원 중에서 회장 겸 대표업무집행사장 1명, 전무 1명과 상무 1명의 임원진을 무한책임사원 회의 결의로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던 원고는 위 정관 조항을 근거로 2015. 6. 10. 단독으로 무한책임사원 회의를 열어 자신

을 피고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 (1)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결의를 통하여 피고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5점)
- (2) 만약 원고가 이 사건 결의로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에 될 수 없다면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이 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5점)

2. 다음의 각 사실관계를 읽고 그 아래의 각 설문에 대하여 답하시오(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의함).

〈기본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의 주식 1,167주(발행주식 총수의 15.8%에 해당한다)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원고는 2017. 7.경 A에 “대표이사 및 이사들은 2014. 6.경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보유하던 A의 주식 중 1,657주를 A에 처분하여 A에 손해를 입혔다. A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상태였고 정관에도 이와 관련한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대표이사 및 이사들은 상법이 정한 주주총회 결의도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이를 독단적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결정을 한 대표이사 및 이사들은 상법 제341조 제4항에 따른 손

해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A는 위와 같은 결정을 한 대표이사 및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제소청구서’라 한다).

다. A가 이 사건 제소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자, 원고는 2017. 8. 21.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A의 이사회 의사록 등이 모두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어 이사회 의사록 등 A의 보유 자료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결정을 한 대표이사 및 이사들이 누구인지 특정은 가능하였다.

마.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제소청구서와 같이 상법 제341조 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그 청구가 기각되자, 제2심에서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 (1)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제소청구서는 A가 책임을 추궁하여야 하는 대상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이 타당한지 밝히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15점)
- (2)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의 제2심에서 피고들은 “제2심에서 추가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이 사건 제소청구서에서 주장한 피고들의 책임인 상법 제341조 제4항과 다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이 타당한지 밝히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15점)

부동산등기법

【문 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하여

1. 이의신청의 대상과 이의신청할 수 있는 자에 대해 각 설명하시오. (12점)
2. 이의신청의 절차와 효력에 대해 각 설명하시오. (8점)
3. 이의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조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4.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재판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5.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甲은 자신 소유명의로 서로 인접한 X토지와 Y토지 위에 W건물을 신축하였다. X토지와

Y토지의 등기기록에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동시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甲, 근저당권자 P회사)가 마쳐져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각 설문은 상호관련성 없음).

1. 등기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X토지와 Y토지가 대장상 합병된 후 합필등기 촉탁이 있었다. 등기관이 위 촉탁에 따른 합필등기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X토지와 Y토지의 대장합병 후 X토지 등기기록에만 가압류등기(채권자 丙)가 마쳐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합필등기가 허용되는지 여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5점)
3. 甲이 X토지와 Y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W건물과 위 건물내에 설치된 기계·기구를 추가로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하기 위한 등기신청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